

의안번호	제136호
의결연월일	2018. 12. 20.

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1월 19일 박승용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2018년 12월 20일,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박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의 구입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지원으로 영농 편의성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기준을 확대하고 불용 농업기계의 처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귀농예정자나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을 우리시에서 하는 경우를 신설함.(안 제9조제1항)
- 농업기계 처분에 대한 매각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하고, 우리시 농업인이 경매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19조)
-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개선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“농업기계 신규 구입 기종 선정” 을 “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여부 “로 변경함 (안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